



2026
초등학교 학적
Q&A집

일러두기



- ▶ 본 Q&A집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에서의 학적 업무 처리 과정의 질의사항을 취합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육부 사항별 안내사항,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 사례집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학적 영역), 경기도 2025 초등 학적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요 학적 업무 처리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학적 민원에 대한 일관성있는 민원 응대를 통해 신뢰도 제고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본 사례집 구성은 경기도 2025 초등 학적 길라잡이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및 교육부의 공문 안내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Contents

I. 관련법령 및 용어

04

II. 학적 Q&A

08

- | | |
|--|----|
| 1. 입학 및 취학(1~20번) | 09 |
| 2. 출결 상황(21~48번) | 26 |
| 3. 전입학 및 전출(49~56번) | 46 |
| 4. 유예·면제·정원외학적관리(57~80번) | 50 |
| 5. 재취학 및 편입학(81~104번) | 66 |
| 6.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입학,
명예졸업 등(105~111번) | 86 |



2026
초등학교 학적 Q&A집

I

관련법령 및 용어



I

관련법령 및 용어

1. 관련 법령

①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56호)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6조(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57호)

④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30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제2조(정의), 제5조(자비유학자격)

⑥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1조(목적),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⑦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21065호)

제2조(정의)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929호)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35650호)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2. 용어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재취학, 취학 포함)는 입학으로 처리함.
-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원칙: 유예, 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원적교 재취학이 원칙임. 다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음.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자료가 전송됨. (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당해학교 수업일수 2/3 불출석)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13. 휴학: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원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 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학령초과자, 외국인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15.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취학유예 처리함.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할 수 있음)

-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 기관임에 유의

17.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횡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재취학한 학생은 유예, 면제 등의 학적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귀국학생의 배정된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임.

21.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2026
초등학교 학적 Q&A집

II

학적 Q&A

- ❶ 입학 및 취학(1~20번)
- ❷ 출결 상황(21~48번)
- ❸ 전입학 및 전출(49~56번)
- ❹ 유예·면제·정원외학적관리(57~80번)
- ❺ 재취학 및 편입학(81~104번)
- ❻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입학,
명예졸업 등(105~111번)



II 학적 Q&A

1 입학 및 취학(1~20번)

Q1. 입학을 하지 않고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간 학생의 경우에는 학적을 생성해서 정원 외 학적 관리 처리를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학적 생성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학교에서는 입학기일에 등교하지 않고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에 학적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미인가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초등학교)

3. 초등학교 예비소집의 실시

나. 예비소집의 실시

7) 학교는 입학기일에 입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적을 생성함.

Q2. 취학 및 미취학의 유형별 학적 생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A2. 입학 또는 취학한 학생은 학적을 생성하고, 입학연기·취학유예·취학면제 등 미취학(불취학 포함)의 경우는 학적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불취학(합법적 등록 절차 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은 취학의무대상자로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 또는 면제 결정 없이 임의로 취학하지 않은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용어로 학적 용어는 아님

키워드 #학적생성 #불취학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초등학교)

3. 초등학교 예비소집의 실시

나. 예비소집의 실시

7) 학교는 입학기일에 입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적을 생성함.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7쪽)

구 분	취학유예·취학면제	유예·면제
신청 대상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아 입학 예정인 아동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이 생성된 학생
신청 기간	입학 예정인 해의 1. 1.부터 해당학교의 입학기일 전까지	입학 이후
신청 기관	학교장	
학적 생성	X	○

Q3. '미취학'과 '불취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3. '미취학'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취학 연령(한국은 만 6~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불취학'은 학령아동으로서 정당한 절차(취학유예, 취학면제 등) 없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및 외국인학교 등록, 기타 사유 미확인 등)를 말합니다.

취학유예, 취학면제, 불취학을 모두 포함하여 미취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불취학(합법적 등록 절차 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은 취학의무대상자로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 또는 면제 결정 없이 임의로 취학하지 않은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용어로 학적 용어는 아님.

키워드 #미취학 #불취학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4쪽)**

다. 용어의 해설

8) 미취학: 의무교육 취학 대상 아동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상태

Q4.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자녀, 난민,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의 취학을 원하면 받아 주어야 하나요?

A4. 그렇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에 가입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다문화학생(외국인)의 취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외국국적 학생들의 입학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 #취학 #외국인 #난민 #불법체류자

관련근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교육)**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Q5.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5.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취학연령 1년을 전후로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조기입학) 또는 만6세(입학연기)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혹은 입학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는 불가합니다. 1월 1일 이후에는 취학예정 학교에 취학유예 및 취학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학통지서 및 진단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키워드 #조기입학 #입학연기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6. 취학 통지서를 받은 상태인데 2월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사한 지역의 초등학교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A6. 그렇습니다. 기존에 취학통지서를 받았더라도 2월 말까지 이사를 하시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주지 이전 신고하시면 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이전 신고 후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으신 후에 원래 지정학교에 연락하고 배정받은 학교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키워드 #이사 #거주지변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⑥ 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 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Q7. 입학과 취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7. 입학은 학교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것을 의미하며 초·중·고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반드시 1학년이 아니라 적정 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이상도 해당되므로 두 용어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키워드 #입학 #취학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5쪽)

구 분	입학	취학
의미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감 -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 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어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제 1학년 입학으로 기재’	초등학교 4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온 경우 ‘초등학교 제 4학년 취학’으로 기재



Q8. 신입생이 주소에 따라 배정된 통학구역의 A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통학구역의 B초등학교로 입학을 원할 경우 가능한가요?

A8. 초등학교 입학은 거주지에 해당 되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입학할 학교를 변경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 ②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 교육생
- ③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그 외, 위에 열거한 3가지 사유에 준하여 학교장이 종합적인 판단하에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통학구역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1쪽)

6)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 및 승낙(학교의 장)

가) 업무 처리



나)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입학할 학교의 변경을 승낙할 경우 승낙에 관한 자료(학부모 신청서 등)를 갖추어야 함

다)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해 아동의 거주지(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 즉시 통보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9. 학생이 9살이고 보호자가 미혼모라 호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에게 올릴 수 없는 사정이기도 하고 집안 누구에게도 올릴 수도 없나 봅니다. 아이가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9.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해야 합니다.

키워드 #주민번호미등록 #호적미등록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10.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으로 영유아기에 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한국어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입학할 희망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하나요?

A10.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는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학시키려는 학교에 신청하여 해당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다문화학생 #다문화 #한국어학급

관련근거

➡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134쪽)

Q5.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으로 영유아기 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한국어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입학할 희망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과 제75조제4항에 따라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는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학시키려는 학교에 신청하여 해당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읍 면 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Q11. 취학유예 시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A11. 그렇습니다. 취학유예 신청 사유가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인 경우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
-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
 - ※ 각 사유에 따른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첨부 필요

키워드 #취학유예 #진단서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99쪽)

나. 유예 및 면제 처리 절차

1) 유예

나)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으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고, 의사의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등의 소견 포함) 필요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된 법정감염병 등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 장기간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



Q12. 공동학구인 지역으로 본교에 입학하려다가 입학기일에 다른 학교로 입학한 아동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적은 본교에서 기생성된 상황으로 신입생 반편성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학적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A12. 해당 학생의 입학 학교를 최종 확인하여 타교에 입학이 확인된 경우, 본교에서 ‘학생자료 개별삭제’를 통해 학적을 삭제 처리합니다.

키워드 #중복학구입학 #이중학적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27쪽)

5. 학생자료개별삭제

- ▶ 경로: [학교별담당부서]-[학교정보]-[학교정보]-[학생자료개별삭제]
- ▶ 기능: 학생자료에 대하여 개별 삭제가 가능함.

■ 학생자료개별삭제 주의사항

- ▶ 학생자료개별삭제 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함. 해당 학생이 맞는지 확인 후 삭제하도록 유의함.
- ▶ 학생자료개별삭제 권한 부여는 최소화하고 업무담당자만 권한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함.
- ▶ 학생자료 삭제가 가능한 시간(퇴근시간 이후로 권장함)이 있음.

■ 학생자료개별삭제 활용의 예

- ▶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와서 대상으로 분류한 본교 1학년 입학 대상자가 입학일 미등교하여 확인결과 다른 학교에 입학식부터 입학하여 재학중임. 즉, 본교에는 한번도 다닌 적이 없고 타교에 입학식부터 등교하고 있는 상황임.
- ▶ 해당 학생의 학적을 본교에서 삭제해야 하는 경우 [학교별담당부서]-[학교정보]-[학교정보]-[학생자료개별삭제] 메뉴에서 학적을 삭제할 수 있음.
- ▶ 반드시 입학한 학교와 공문을 통해 학생의 입학여부 및 학적생성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Q13.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을 이유로 입학대상 학생을 유예처리 할 수 있나요?

A13. 불가합니다. 유예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며 가정 내 학습은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 할 수 있음)

-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시·도 포함)등록 여부 확인 필수
-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 기관임에 유의

키워드 #가정내학습 #유예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4쪽)**

나.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

-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 미인정 유학(미인정 해외 출국),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가정내학습(홈스쿨링)
 -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생 등
- 인정유학으로 해외 출국하였으나 정규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학생



Q14. 예비소집일에 등록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4.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은 반드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해외출국 및 전출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출국이 확인되었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 이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취학의무의 유예·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전입 지역 배정학교에 예비소집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합니다. 해외출국이나 전출 사실이 없는데도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 및 경찰 수사외뢰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키워드 #예비소집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 장의 취학 독촉 경고 및 통보)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면·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Q15.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 사유로(입학 전)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있는데, 이런 경우 학적을 생성해야 하나요?

A15. 아닙니다. ‘취학유예’는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아 입학 예정인 아동이 입학 기일 전에 신청하여 유예 처리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예’는 입학하여 학적이 생성된 학생이 입학 이후 신청하여 유예 처리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학적 생성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취학유예’의 경우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적을 생성하지 않으며, ‘유예’는 입학 이후 학적이 이미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키워드 #취학유예 #학적생성 #대안교육기관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7쪽)

구 분	취학유예·취학면제	유예·면제
신청 대상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아 입학 예정인 아동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이 생성된 학생
신청 기간	입학 예정인 해의 1. 1.부터 해당학교의 입학기일 전까지	입학 이후
신청 기관	학교장	
학적 생성	X	○

➔ 경기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초등학교)

3. 초등학교 예비소집의 실시

나. 예비소집의 실시

7) 학교는 입학기일에 입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적을 생성함.



Q16.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아 입학 예정인 아동이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학적을 생성해야 하나요?

A16. 아닙니다. 해당 학교에 입학 전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등록한 학생은 '불취학' 유형인 미취학아동으로 분류되며, 입학하지 않았으므로 학적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은 학적을 생성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지속적인 취학독려, 분기별 소재 및 안전확인을 합니다. 만약, 해당 학생이 하루라도 출석하여 학적을 생성(입학)하였다면, 장기미입정결석 처리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원 외 학적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취학유예 #학적생성 #미인가대안교육시설 #미등록대안교육시설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46쪽)

Q05. 입학을 하지 않고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간 학생의 경우에는 학적을 생성해서 정원외관리 처리를 해야 하나요?

A05. 학적 생성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학적 생성 없이 미인가(미등록) 대안 교육시설에 등록한 학생은 학적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초등학교)

3. 초등학교 예비소집의 실시

나. 예비소집의 실시

7) 학교는 입학기일에 입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적을 생성함.



Q17. 취학유예나 취학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해외에 출국하여 불취학한 미취학아동이 있습니다.(학적을 생성하지 않음) 이 아동이 다음 학년도에 귀국하여 취학하려고 할 때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지 않았어도 취학 및 해당 학년도 수료/진급이 가능할까요?

A17.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 현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귀국학생 등에 준해서 처리합니다. 외국 현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의 재취학 절차에 준해서 처리합니다.(정원 외 학적 관리 된 당해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이 불가능)

키워드 #미취학아동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42쪽)

Q01. 미인정유학 중에 재취학하는 경우와 미인가 교육 시설이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중에 재취학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01. 1. 미인정 유학 중 재취학: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귀국학생에 준해서 처리합니다. (정원외학적관리 당해연도 이후에 재취학 하는 경우)
2. 미인가 대안교육이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중 재취학: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재취학이 가능하고, 재취학 당시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18. 취학아동명부에 있는 아동이 이미 해외에 출국해있고,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에는 해당하나 면제 신청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해 불취학에 따른 미취학아동으로 분류된 상황입니다.(학적 생성하지 않음) 4월경 부모님 중 한 분이 잠시 한국에 들어오실 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이번 학년도에서 취학면제 처리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음 학년도 취학아동명부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서류를 받고 취학 면제처리를 해야 하나요?

A18. 취학 의무 면제 사유가 명백한 경우(정당한 해외출국 등)에는 보호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는 시점(4월경)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 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출국으로 인한 면제 처리가 완료되면 이후 학년도 취학아동명부에는 재등재되지 않습니다.(만약 서류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될 수 있음)

키워드 #미취학아동 #취학면제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1쪽)

- 2) 면제
 - 나) 면제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
 - 다)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5쪽)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및 유예일 명시) → 보호자, 교육장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나이스 면제(유예) 처리, 취학관리 전담기구 보고현황 등록·제출

Q19. 해외거주로 ‘불취학’한 학생이 8월에 귀국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 최초 취학하고자 합니다. 해외 학제차이로 해외 현지에서 초등학교에 다닌 적 없는데 국내에 귀국시 1학년으로 입학 및 진급 가능한가요?

A19. 국내 초등학교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취학 하는 경우,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1학기가 부족할 때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취학 허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생은 해외에서 정규학교를 다닌 이력이 없기 때문에 취학 이후에 진급을 위한 연간수업 일수 3분의 2이상 확보가 어려워 진급은 불가능합니다.

※ 2~6학년의 경우

- ▶ 학생이 해외 정규학교를 다녔을 경우: 귀국학생에 준하여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배정을 하며, 취학 기준일(입급일)로부터 학년도 종료일까지 2/3이상 출석 할 경우에 수료 및 진급이 가능합니다.
- ▶ 학생이 해외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배정을 하여 취학을 할수 있으나, 연간 수업일수 2/3이상 미확보시 수료 및 진급이 불가능합니다.

키워드 #취학 #입학 #귀국학생 #진급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24쪽)

〈학년 배정〉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Q20. 예비소집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한 학생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학부모 연락이 닿지 않는데 이 경우 학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0.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교장 직권으로 유예(면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이중국적 #취학면제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20쪽)

04. 취학의 면제 및 유예

나. 세부 업무 처리 내용

2) 학교장 직권 취학유예(면제)

아동이나 아동의 학부모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사유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② 출결 상황(21~48번)

Q21. 학생이 1교시 미인정 지각을 하고, 4교시에 병원 진료로 인한 질병 결과를 하였으며, 6교시에는 사회봉사로 인해 인정 조퇴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 학생의 출결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21.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1, 4, 6교시는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되,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결의 종류는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키워드 #중복출결처리

관련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30호]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3. 지각·조퇴·결과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8쪽)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Q22. 목요일에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결석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고, 금요일에 중요한 수행평가가 있어서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후 토요일에 해당 학생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결석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학생의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2. 조부모 사망 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5일입니다. 목요일 부터 경조사(사망)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량휴업일이 없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기간 중 수행평가 등의 사유로 학생이 희망하여 출석했다라도 출석 인정 결석 가능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최초 주어진 5일의 기간 내에서만 인정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경조사 #조부모사망

관련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30호]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6쪽)

나. 결석

9)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Q23. 학생의 조부가 위독하여 수요일에 결석하였으나 차도가 있어 목요일에는 등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저녁 조부가 사망하였고 금요일에 다시 결석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정리하면 수요일 결석, 목요일 등교, 금요일 결석인 경우인데요. 이럴 때 경조사 결석 허용일수인 5일 인정의 시작시점은 수요일부터인가요? 금요일부터인가요?

A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상황 및 학부모(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일부터 경조사 결석처리 시 : 수, 목, 금, 월, 화 출석인정처리
 2. 금요일부터 경조사 결석처리 시 : 금, 월, 화, 수, 목 출석인정처리
- (※ 금요일부터 경조사 결석 처리 시에는 수요일 결석은 미인정결석 처리)

키워드 #경조사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6쪽)

나. 결석

- 9)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Q24.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4.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첩장, 부고장, 장례 확인서, 사망 진단서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사망 사실과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년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출결 증빙자료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키워드 #경조사 #경조사증빙서류

관련근거

➡ 무릎 탁! 학생부 길잡이 1부(20쪽)

Q1.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A1.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청첩장·사망진단서·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Q25. 학생의 할머니 사망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을 장례식에 3일, 탈상 2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나요?

A25. 불가합니다. 경조사 결석은 대상별 정해진 결석일수의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하므로 사망으로 인한 3일과 출석인정결석 기간 이후로 탈상을 위한 2일은 분리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 #경조사 #분리사용

관련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30호]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6쪽)

나. 결석

9)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Q26. 한 학생이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당일인 월요일 오후에 조퇴하였습니다. 조퇴도 출석 인정 결석 일수 안에 포함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학생의 출석인정 결석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26. 조모 사망 당일에 실시한 조퇴도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당일 조퇴를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하는 경우, 주중에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이 없다면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가능 기간은 금요일까지입니다.

키워드 #경조사 #출석인정조퇴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6쪽)

나. 결석

- 9)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8쪽)

다. 지각·조퇴·결과

-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Q27.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때문에 지각하는 경우 지각의 종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7.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한 지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출석인정지각’으로 처리할지, 기타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타지각’으로 처리할지 등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키워드 #학생건강검진 #출석인정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1쪽)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3쪽)

2. 결석

마. 기타 결석

-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Q28.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의 개인 사정 외 학교장 인정 사유로 판단하여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결석 발생 후 사후 기타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A28.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기타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의 판단은 담임교사 개인의 판단이나 업무 담당자의 판단이 아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사유여야 하며 추후 악용, 남발 가능성, 비밀관성에 의한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타 결석이 미리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유(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에 해당이 될 경우에 사전결재를 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후결재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기타결석 #사후결재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2~63쪽)

별표 8(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Q29.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의 주체가 학생인가요? 학부모가 조부모 간병을 위하여 학생이 결석을 해야 하는 상황(가족 중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와 함께 조부모 댁 또는 병원이 있는 곳에서 생활 등)도 위의 사항에 포함되나요?

A29. 기타결석에 해당하는 부모 봉양, 간병 등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은 학생이 주체입니다. 부모가 학생의 조부모 간병을 하여 자녀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출석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및 근거를 종합·판단하여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에 따른 기타결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기타결석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2~63쪽)

별표 8(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Q30.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결석에 대하여 단위학교별로 인정근거를 무엇으로 하는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문의가 많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학부모가 당일날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학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고, 어느 학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혼선이 큼니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결석의 인정근거는 무엇인가요?

A30. 기타 합당한 사유의 결석인지 아닌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기타 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합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기타 결석의 허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증빙서류(근거 자료를 갖춘 내부결재 또는 (기타)결석 신고서 등)를 갖춰야 합니다.

키워드 #기타결석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2~63쪽)

별표 8(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Q31. 지각과 조퇴가 6시간 누적되면 결석 1일로 되나요?

A31. 아닙니다. 일반 학생의 지각·조퇴·결과의 누적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 학생선수는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하여 학생선수 대회참가 연간 허용일수(초등 20일)에서 차감됩니다.

키워드 #지각 #조퇴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8쪽)

2.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다. 지각·조퇴·결과

- 1)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74쪽)

2)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 나)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Q32. 지각을 합하여 몇 시간이 넘으면 결석 1일로 처리가 되나요? 또는 지각이나 조퇴를 얼마나 많이 하면 유급이 되나요?

A32. 학교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로, 과거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까지는 정근 산정 시 지각(또는 조퇴, 결과)을 3회 하면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부터는 해당 문구가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시간을 합하여 결석으로 처리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만약 질병지각, 미인정 조퇴 등이라 하더라도 사유와 상관없이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학생 개인사유(운동, 연예 활동 등)로 매일 조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예를 들어 한 학년도 중에 질병지각 40회, 미인정 조퇴 30회를 한 학생이나, 2학기 동안 매일 1교시 후 조퇴를 하는 학생 등도 학년 수료는 가능합니다.

키워드 #지각 #조퇴 #수료 #유급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8쪽)

2.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다. 지각·조퇴·결과

- 1)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학교장이 정한다.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021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45쪽)

28번.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시 결석처리 여부

- 질의: 최근 아이가 병원에 간다고 지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각을 3번 하면 결석처리 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결석으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 회신: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까지는 정근 산정 시 지각(또는 조퇴, 결과)을 3회 하면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Q33.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수료에 필요한 3분의 2는 127일인가요? 128일인가요? 어떻게 계산 하나요?

A33. 128일입니다.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려 128일로 계산합니다.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도 말에 유급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키워드 #수업일수 #수료기준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6쪽)

마.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Q34.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34. ‘도서·벽지’라 함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입니다. 국내 원격지의 기준은 이에 준하여 단위학교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도서벽지

관련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제2조관련)

1. 도서(132개) - 세부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 벽지(400개) - 세부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Q35. 소속 초등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최대 연간 20일입니다. 국외로 가는 경우에도 동일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5. 그렇습니다.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목적에 맞게 국외로 가는 경우에도 소속 초등학교에서 정한 출석인정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키워드 #교외체험학습 #국외체험학습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3쪽)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불안정 사항

-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 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Q36. 가정에서 미인정(무단)으로 1일을 결석하고 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전출교에서는 전출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A36. 전출생이 1일 미인정결석하고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 1일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전입교에서는 실제로 학생이 등교한 날을 전입일로 정합니다.

키워드 #미인정결석 #전입일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1쪽)

나.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기재 방법]

-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단,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Q37. 학교 재량휴업일이 있어, 이번 달에는 수업일이 19일인데, 위탁기관 홈페이지의 출결확인서에는 수업일수가 20일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37. 학교의 수업일수와 위탁기관의 수업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된 학생이므로 위탁기관의 수업일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위탁기관의 휴업일에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경우 위탁기관 수업일수에 학교 출석일수를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키워드 #위탁기관 #수업일수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9쪽)

5)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학생은 위탁학생으로 관리하며, 위탁학생 중 위탁교(기관)뿐만 아니라 소속교에도 출석한 경우, 해당 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한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75쪽)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유의사항]

- 장기결석 기간, 등교시각, 하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Q38. 미인정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확인과 관리를 해야 하나요?

A38. 미인정 유학에 의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을 통해 학생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으로 정원 외 학적 관리 처리 후에는 보호자에게 통보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의무교육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미인정유학 #미인정결석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5쪽)

미인정 결석 처리(수업일수 1/3까지)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 → 나이스 정원 외 학적 관리 → 교육장에게 보고 → 나이스 취학관리 전담기구 보고현황 등록·제출

Q39.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중 출국사실과 소재·안전이 확인되면 가정방문과 내교(면담)를 생략할 수 있는데, 결석 10일차에 교육장 보고하기 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자체도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교 요청만 하지 않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는 해야 하나요?

A39. 경기도 초등 학적길라잡이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고,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정방문, 내교(면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교(면담)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또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인정 결석이 수업일수 1/3 이상 지속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장기결석 #미인정결석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55쪽)

(2)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및 대응 흐름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고,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정방문, 내교(면담)를 생략할 수 있다.

Q40. 학생이 학부모와 해외여행(어학체험)을 13일 정도 갑니다. 미인정결석 사유 및 행선지가 명확한 데도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및 대응흐름도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할까요?

A40. 그렇습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어학연수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입니다.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미인정결석) 경기도 초등학적 길라잡이 미인정 결석 대응흐름도에 따라 관리합니다.

키워드 #미인정결석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3쪽)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55쪽)

(2)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및 대응 흐름도

Q41. 학생이 연속 10일 미만으로 미인정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교육장 보고를 해야 하나요?

A41. 아닙니다. 미인정결석 교육장 보고 대상은 수업일수 기준 연속 10일 이상 미인정결석 학생으로, 해당학생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장기결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므로 집중관리카드 마련 등을 통한 자체 관리를 권장합니다.

키워드 #미인정결석 #집중관리카드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55쪽)

(2)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및 대응 흐름도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133쪽)

Q. 학생이 미인정 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인정 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학생은 아동학대, 장기결석의 가능성이 큰 학생이므로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는 등 자체 관리를 권장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징후나 의심 정황이포착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며 미인정 결석 보고 세부 사항은 각시·도별 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Q42.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장기결석 기준일을 5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은 결석 2일째부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결석 일수를 학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것이지요?

A42. 그렇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특기사항]에 기재하는 장기결석의 기준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따라서 4일~10일 범위 안에서 학교마다 장기결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기간별(결석 당일~결석 2일, 결석 3~9일, 결석 10일 이후)관리는 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이때의 기간 구분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 기재를 위한 장기결석 기준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키워드 #장기결석 #학생관리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71쪽)

③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한다.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Q43.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의 보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43. 결석신고서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또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빙자료(진단서, 의견서 등)의 보유기간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합니다.

키워드 #결석신고서 #보존기간

관련근거**➡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51쪽)**

- 3) 결석계 관리
 - 가) 결석계 보존 기간: 5년
 - 나) 결석계 보존 방법: 해당 학년도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로 등록하고 원본을문서고에 이관하여 보관함.
 - 다) 증빙자료 보유 기간: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빙자료(진단서, 의견서 등)의 보유기간은 학교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함.

Q44. 장기결석의 경우 출결 특기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교와 전입교의 장기 결석 기간이 달라서 특기사항 입력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예) 전출교는 장기 결석일 5일, 전입교는 4일로 보는데 전입 학생이 4일 결석이 있는 경우

A44. 전입일을 기준으로 전출일까지의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전출교의 규정에 맞게 입력하고, 전입일 이후부터의 생활기록부 입력은 전입교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의 4일 결석은 특기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전출교 #장기결석

관련근거**➡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75쪽)****[유의사항]**

- 장기결석 기간, 등교시각, 하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Q45. 전출입 시 학사일정 차이로 인한 190일 미만 확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개근' 입력도 가능한지요?

A45. 190일과는 관계없이 전출교에서의 출석일수와 전입교의 잔여 수업일수 합이 전입교의 당해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한 경우는 수료와 진급, 졸업이 가능합니다.

전입학 시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를 합하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개근'을 입력합니다.

키워드 #수업일수 #개근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9쪽)

하. 기타 학적처리 방법

- 1) 전입학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72쪽)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 2)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취학(상위학년으로 중도 재취학 제외)의 경우는 재취학 이전과 재취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의 입력여부를 결정한다.



Q46.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대응 절차에 따라 연속결석 10일 차에 하는 보고와 복귀 보고는 NEIS로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NEIS 외에 K-에듀파인 공문도 별도로 같이 해야 하나요?

A46.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매년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인정 학생 발생 시 즉시 나이스로 보고하고 별도의 공문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장기결석 #취학관리전담기구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 장의 취학 독촉 경고 및 통보)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Q47. 아이를 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안교육시설 재학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취학독촉(출석독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47.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취학 또는 출석을 독려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합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미인정결석 #미인가대안학교 #출석독려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 경고 및 통보)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Q48. 타지역에서 이전년도에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이던 학생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 이전 후 본교에 재취학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번 학년 결석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48. 재취학, 전입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재취학, 전입학 등)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합니다.

키워드 #미인가 교육시설 #재취학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0쪽)

별표 8(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③ 전입학 및 전출(49~56번)

Q49.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 처리가 가능한가요?

A49.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2년 3월 21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중 전학권고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전학을 희망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전학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학교를 지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필요서류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학교폭력 #교육장학교지정전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Q50. 이미 학교에서 종업식을 마친 경우 전입 희망 학생의 전출입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50.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출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전출 처리하고 전입교에서는 전입학 처리를 합니다. 전입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 상에서 진급 처리를 해 이미 학적반영이 완료되었을 경우, '진급누락자관리' 메뉴를 통해 전입생에 대해서 상급학년으로 진급 처리를 진행합니다.

키워드 #학년말전출입 #진급누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Q51.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 학력 인정과 학적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51. 재외 한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의 전출·입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 학년 해당 학업성적으로 반영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한국학교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6쪽)

- 3) 한국 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한다. 다만, 동일(유사)교과 인정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5) 한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의 전출·입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하여 인정한다.

Q52.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국내학교에 존재하는 과목과 존재하지 않는 과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A52.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동일(유사)교과 인정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키워드 #한국학교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6쪽)

- 3) 한국 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한다. 다만, 동일(유사)교과 인정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Q53. 교직원 자녀 중에 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데, (우리 학교가 통학구역상 주소지에 배정된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장 승인을 받아서 우리 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53. 불가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에 따르면 주소지 이전이 원칙이고,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가정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신임지 발령으로 부임한 교직원이 타학군에 속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부임한 학교로 전입시키는 것은 전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교직원자녀 #전학 #학교장승인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Q54. 재학중인 학생이 주소를 이전하면 반드시 학교를 전학해야 하나요?

A54. 아닙니다. 전학은 기본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가 희망할 때 요건이 성립하므로 거주 이전을 이유로 전학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통학 편의 및 안전지도를 고려해 거주지 관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학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전학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불편, 졸업 후 원거리 중학교 배정 등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학생이 감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전학 #주소이전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 절차)

-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Q55. 전입생이 외국인이어서 전입신고증이나 등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55.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키워드 #전입학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1쪽)

다) 업무처리

-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장, 학교장은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하고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미취학 아동의 입학에 허용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Q56.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되어 미성년자 후견인의 거주지로 학생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 미성년자 후견인의 등본을 근거로 전학이 가능하나요?

A56.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되므로 학생 및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으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전입학 #후견인 #친권자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교육감이 결정한다.

④ 유예·면제·정원외학적관리(57~80번)

Q57. 학기 중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학생이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기간 학생의 출결과 학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57.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수료 기준 미충족 요건이 되는 수업일 이후에도 학생이 원한다면 남은 수업일수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년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유급 처리한 후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키워드 #유급 #정원외학적관리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6, 50, 52쪽)

마.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유예·면제·유급·조기진급 및 학교장이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예시〉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된 경우

학적사항	2025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2026.02.28. 출석일수 미달로 초등학교 1학년 유급



Q58.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면제 중인 학생이 일부 기간동안 입출국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면제처리를 취소해야 하나요?

A58. 아닙니다. 학생의 해외거주 사유 소멸로 인한 전가족 귀국이 아닌 일시적 귀국(해외 학교 방학기간 중 일시 귀국 등)에 대해서는 따로 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와 모 중 1명이 귀국하더라도 면제 사유에 부합하면(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일 경우) 면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면제 #정당한해외출국 #면제사유소멸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6쪽)

바. 면제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경기도 초·중·고·특·학·적·길·라·잡·이(101쪽)

다)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라)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마)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Q59.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3월 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입학으로 취학유예 학생들에 대해 유예 기준일을 3월 1일로 지정 할 수 있나요?

A59. 가능합니다.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 학적 변동 기준일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3월 1일을 학적변동일로 결정했다면 3월 1일에 유예 처리 가능합니다.

키워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안교육기관 #유예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7쪽)

아. 유예

- 1)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Q60. 전년도에 유예(대안교육기관)를 신청하여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이 올해 다시 유예를 연장한 경우, 나이스 학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60. 나이스 상에서 정원 외 학적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므로 최초 유예 신청과 동일한 과정으로 다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유예신청서 제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등)

키워드 #유예연장 #정원외학적관리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7쪽)

아. 유예

- 1)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있다.

※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Q61.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에 초등학교에서 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언제(몇살)까지 관리해야 할까요?

A61.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이 성인(만 18세)이 되기 전에는 ‘원적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재취학’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력(검정고시 등)을 취득’한 경우,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상 명확한 의무교육 학령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및 제6절(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5조(목적)에 따라,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아동 및 학생의 의무교육기관 수료 연령,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의 “아동” 정의나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 점을 참고하여 연령이 만18세 이상 도달된 학생은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키워드 #정원외학적관리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Q62.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이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나 중학교 입학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면제처리가 가능할까요?

A62. 가능합니다. 중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학력인정 검정고시 합격증을 제출 받아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신청을 통해 면제처리하시면 됩니다.(단, 상급학교 진학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전확인 및 취학독려를 해야 함)

키워드 #면제 #검정고시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7쪽)

- 2)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다.

Q63.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데 학생이 동반할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가 되나요?

A63.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할 경우는 공무상 해외 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며 증빙자료,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 기간 등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므로 위 사유는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키워드 #정당한해외출국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6쪽)

-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Q64.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된 거주지 통학구역의 학교로 자료를 이관할 수 있나요?

A64. 아닙니다.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관리주체는 원적교입니다. 다만, 학생이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를 전송(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키워드 #학업중단 #거주지이전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6쪽)

다. 재취학

2)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가 전송됨. (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함.)

Q65. 2월에 미인정 결석을 시작한 3학년 학생의 경우 정원 외 학적 관리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A65. 해당 학생이 전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였다면 3학년 수료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4학년으로 진급처리를 합니다. 진급 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관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입니다. 따라서 바뀐 학년도의 3월 1일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날까지 미인정 결석 처리한 후, 그 다음 날부터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미인정결석 #정원외학적관리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2쪽)

마.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2)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Q66. 6학년 학생이 1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출국을 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나요?

A66. 아닙니다. 해당 학년의 1학기를 마친 것은 수료 및 진급에 필요한 수업일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졸업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졸업은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마친 것이고 수료는 해당 학년의 전 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키워드 # 해외출국 # 졸업장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Q67.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을 가정 사정으로 학생만 데리고 부(또는 모)의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67.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취학 중 부(또는 모)의 본국으로 데리고 돌아갔다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미인정결석 처리를 하다가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고 취학관리전담기구(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 외국국적의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면제로 처리합니다.

키워드 # 국제결혼 # 본국귀국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30쪽)

- 가. 학교를 중단한 경우: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Q68. 사망 학생의 면제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68. 사망에 의한 면제처리의 경우 면제 신청서와 증빙서류(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내부결재를 받아 면제처리를 완료합니다. 면제일은 학생의 사망일이며 이후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키워드 #사망 #면제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2쪽)

가. 면제 처리 절차: 보호자의 신청 →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개최 → 승인여부 확정 → 승인 명단 공문발송(교육장 및 읍·면·동장)→사후처리

나. 제출 서류

- 1) 사망: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학생의 질병, 사고 사망 확인서
- 사망 시, 사망 확인 서류를 첨부한 후 내부결재하여 면제 처리(심의 절차 생략).

Q69. 초등학생이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학교로 유학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A69. UAE에서는 위조 방지 등의 사유로 Transfer Certificate(전학 증명서)에 자국 교육부 장관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Transfer Certificate(전학 증명서)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서 정해놓은 서식은 없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며, 현 재적교에서 발급 확인에 따른 공문 발송 시 해외근무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는 민원인 요청 서류 발급 후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로 확인 공문 발송해야 하며 학생인적사항(성명, 학반), 유학 사유, 발급 서류 종류를 기입해야 합니다.

키워드 #UAE유학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31쪽)

가. 외국 학력 인정학교 확인방법

- 1) 교육부 홈페이지, 아포스티유(Apostille), 영사 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함.(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 2) 한글이나 영문 이외의 문자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장의 직인·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Q70. 장기(미인정)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처리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반드시 64일(수업일수 190일 기준) 이후에 개최해야 하나요?

A70. 그렇습니다. 미인정결석 64일째 되는 날까지는 결석 처리로 유지하고, 65일째 이후에 학교 의무교육관리 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정원외학적관리 #64일결석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2쪽)

마. 정원 외 학적 관리 방법

- 2)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4쪽)

가. 정원 외 학적 관리 처리 절차: 미인정 결석 처리(수업일수 1/3까지)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 → 나이스 정원 외 학적

Q71. 학생이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면제가 가능한 사유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동반출국하는 부양의무자 1인의 해외취업도 면제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A71. 아닙니다. 면제의 요건 중 부양의무자 1인과 출국하는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며 증빙자료, 거주기간, 실제체류기간, 재학기간 등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의 정원 외 학적 관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해외취업 #면제 #정당한해외출국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1쪽)

2) 면제

라)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Q72.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사유인 ‘미인정유학,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등도 유예신청서를 받은 후 유예 승인여부를 심의해야 하나요?

A72. 아닙니다. 미인정유학,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등은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예신청서 제출 및 유예 승인여부를 심의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는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이므로 보호자 확인서,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재학증명서, 홈스쿨링 계획서 등을 받으시고 수업일수 3분의1이상 결석한 경우 학칙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 유예 # 장기결석 # 정원외학적관리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 정당한 사유 없이에 해당하는 결석(미인정 결석)(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 105쪽)
 - 예시: 미인정 유학,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가정내학습(홈스쿨링)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5쪽)

가. 유예 요건

- 1)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Q73.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중학교에 재취학한 것이 유선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등학교로 면제신청서와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은 하지 않고 있는데, 중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학교장 직권 면제 처리할 수 있나요?

A73. 아닙니다. 검정고시 합격에 따른 초등학교 학적 면제는 보호자에게 면제신청서와 검정고시 합격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초등학교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근거로 면제 처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키워드 #검정고시 #면제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7쪽)

아. 유예

- 2)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다.

Q74.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6월에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출국 후 현지에서 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규학교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면제처리가 불가능한가요?

A74. 원칙적으로 면제 사유 관련 증빙서류가 갖추어져야 면제 처리 가능합니다. 입학허가서 제출할때까지 미인정결석 처리하다가 입학허가서가 제출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출국일을 면제일로 지정하여 면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면제일 #정당한해외출국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2쪽)

- 가. 해외 출국의 경우 면제일은 출국일로 처리한다.
- 나. 면제 제출 서류(정당한 해외출국)
 -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 2)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발령장 등) 또는 이민 관련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5) 외국학교 입학허가서(학생)
 - 6) 부 또는 모의 취업(유학)으로 인한 전가족 출국시: 부모 취업(유학)증빙서류, 전가족 해외이주 관련 서류

Q75.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를 신청한 학생이 면제 이전에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미리 출국할 경우 면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학적길라잡이에는 출국일이 면제일로 되어있어서 체험학습이 끝난 다음날로 해도 되나요?

A75. 면제일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날로 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해외출국에 따른 면제일은 출국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위원회에서 적절한 별도일자로 설정 가능) 체험학습 신청으로 이미 출국한 경우 출국일을 면제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면제일자 #정당한해외출국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2쪽)

- 가. 해외 출국의 경우 면제일은 출국일로 처리한다.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2쪽)

〈심의·결정 및 통보〉

- ▶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개최 ▶ 승인여부 확정
 - 심의 결정 및 회의록 작성
 - 학교장 결재(면제일 명시)

Q76. 국내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6월에 출국하여 9월에 학제가 시작되는 해외 학교(12학년제)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방학 전에 출국하는 경우인데 1학기 수료 기준이 있을까요?

A76. 국내는 학기별 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국내는 학년제 적용) 수료는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당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진급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해외출국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5쪽)

2. 별표8(출결상황 관리)

가. 수업일수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학이 불가능하다.

Q77. 한 학생의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일수의 합이 64일을 넘었습니다. 질병결석일을 제외하고 미인정결석일만 64일 넘어야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A77.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미인정결석 학생을 의미하므로 질병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 결석은 정원 외 학적 관리 처리를 위한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유급이란 수업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인정결석+질병결석+기타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진급이 불가능합니다.(유급대상)

키워드 #정원외학적관리 #학적변동일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2쪽)

마.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 2)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Q78. 면제 사유 중 ‘이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78. 이민에 의한 면제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로는 면제신청서, 이민관련 서류(이민비자 사본, 주택거래 내역 등), 출입국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서류는 학교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면제 #이민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2쪽)

가.면제 제출 서류(정당한 해외출국)

-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 2)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발령장 등) 또는 이민 관련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5) 외국학교 입학허가서(학생)
- 6) 부 또는 모의 취업(유학)으로 인한 전가족 출국시: 부모 취업(유학)증빙서류, 전가족 해외이주 관련 서류



Q7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은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본교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인데, 대안교육기관이 다른 시도에 있어도 유예 대상이 될까요?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목록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79. 1) 유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학생이 그 기관에 재학 중이라면 동일하게 취학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확인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대안교육기관 #유예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7쪽)

※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 확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부서명에 평생교육과 선택

번호	부서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	평생교육과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2025. 8. 8. 기준)	송인재	2025-08-08	741
7	평생교육과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2024. 11. 15. 기준)	김동현	2025-03-19	1198

Q80. 정원 외 학적 관리, 면제 처리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부모가 참석 안하고 결정내용만 안내해도 될까요?

A80. 아닙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생이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소재파악 및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9쪽)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함.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행방불명, 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2쪽)

유의사항

-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



5 재취학 및 편입학(81~104번)

Q81.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재취학 시 거주지 이동으로 통학구역이 바뀌었을 경우, 원적교가 아닌 바뀐 통학구역에 배정된 학교로 재취학할 수 있나요?

A81. 가능합니다.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거주지 이전이 확인된 경우, 타교로의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 학교급에 한해 재취학 학교에서 원적교로 학생부 자료요청을 하고, 원적교에서 재취학교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를 전송합니다.(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

키워드 #재취학 #통학구역변경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18쪽)

Q02.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주지 통학구역의 학교로 자료를 이관할 수 있나요?

A02.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관리주체는 원적교입니다. 다만,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이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를 전송(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6쪽)

다. 재취학

2)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가 전송됨. (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함)



Q82. 미인정 유학 중에 재취학하는 경우와 미인가 교육 시설이나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중에 재취학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82. 1. 미인정 유학 중 재취학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귀국 학생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재취학일부터 남은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시 진급 가능합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 미인가 대안 교육,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등과 동일하게 처리)

2. 미인가 대안교육이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중 재취학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재취학이 가능하고, 재취학 학적변동일 기준 당해 학년수업일수의 2/3 미만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재취학 #미인정유학 #미인가대안교육 #가정내학습 #홈스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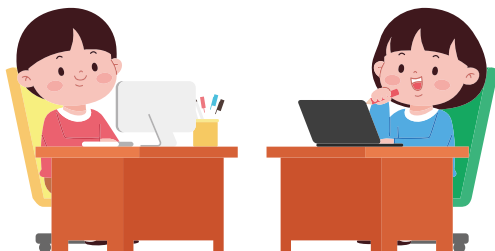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Q83. 정당한 사유로 해외출국 후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이 6개월 내에 귀국할 경우 학적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83.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한 학기) 미만인 경우에는 미인정유학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제 정세 불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입국하는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입국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또한, 외국학교의 학제 편제 차이로 인하여 6개월에 미달하지만 한 학기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성적인 산출된 경우에는 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인정유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조기귀국 #재취학

관련근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 ①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95쪽)

- (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 출국
(나)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되어도 해당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거나, 수학 기간이 6개월(한 학기) 미만인 경우



Q84. 귀국학생의 재취학 신청은 언제 하나요?

A84. 귀국학생의 재취학 신청은 귀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입금을 권장합니다.

키워드 #귀국학생 #재취학신청 #재취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39쪽)

- Q.75 학기 중 귀국하는 우리나라 국적 중학생의 경우 귀국 후 며칠 이내로 재취학(편입학) 신청을 해야 하나요?
- A.75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재취학(편입학) 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입금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이미 수료하고 방학 전에 귀국한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필요한 만큼의 수학기간이 인정된다면, 최종 재학일 이후 재취학(편입학)은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재취학(편입학) 일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85. 2024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나, 부의 주재원 발령으로 2024년 2월 미국 출국하여 입학할 수 없습니다. 미국 초등학교는 9월에 학기가 시작되어 9월에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025년 2월에 귀국하여 2025학년도 3월에 학령에 맞는 2학년으로 취학할 수 있나요?

A85. 해당 사례는 미국에서 이수한 1학년 1학기만 인정되고, 국내에서 이수한 학기 및 중복학기가 없음에 따라 2학년 1학기로 학기를 올려 배정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학생이 2학년으로 취학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2학년으로 배정할 수는 있습니다.

키워드 #귀국학생 #취학 #이수인정평가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25쪽)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Q86. 아버지가 해외 발령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어머니는 아버지의 발령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이는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에 해당되나요?

A86. 아닙니다. '정당한 해외출국'은 전 가족이 해외에 출국하여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입니다. 단,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할 경우는 해당 부양의무자의 공무원 해외 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 사유는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키워드 #정당한해외출국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94쪽)

(1) 정당한 해외 출국

(가) 전 가족이 해외에 출국하여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또는 유학 등으로 전가족 출국 시)

(나)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 단, 부 또는 모의 공무원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며증빙자료,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등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



Q87.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난민, 불법체류자 등)가 학기 도중에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87.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남은 시점까지 1학년 신입생으로 입급하는 경우 '입학'으로, 1학년이 아닌 학년으로 중도입급하는 경우 '취학'으로, 학업중단(면제) 후 다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처리합니다.

※ 나이스 관련 메뉴: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

키워드 #외국인 #편입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21쪽)

- 외국 국적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의 입학(신입학)과 동일하게 처리함.
-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임.
- 사용되는 학적용어: 입학
- 입학 시기: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당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입급하는 경우 '입학'으로 처리함.



Q88. 2025학년도 4학년 재학 중 3월에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출국하여 면제 중인 학생이 같은 해 7월에 돌아왔습니다. 출석일수를 계산해 보니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인데 같은 학년(4학년)에 재취학 및 5학년 진급이 가능한가요?

A88. 불가능합니다.

1. 정당한 해외출국을 사유로 출국하였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한 학기) 미만인 경우는 미인정유학으로 처리되며, 해당기간동안의 출결상황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3월 면제일부터 7월 복귀일 사이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이상인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어 당해년도 재취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출국 당시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후 출석일수의 합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라면 학년 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5학년 진급은 불가능합니다.
- ※ 단,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키워드

#정당한해외출국 #조기귀국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6쪽)

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Q89. 본교 2학년 학생이 미인정 유학으로 인하여 정원 외 학적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학년도 2학년 말에 귀국하여 재취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취학이 가능한지요?

A89. 불가능합니다. 미인정 유학으로 인해 정원 외 학적 관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학년도 재취학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학업 중단일부터 재취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되어,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키워드 #미인정유학 #재취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1쪽)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Q90. 4학년인 학생이 부의 해외근무로 인한 전 가족 이주로 면제처리되었습니다. 이후 학생이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2년(4학기)동안 재학하고 6학년이 되어 귀국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배정해야 하나요?

A90. 아닙니다.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전 가족 해외 이주에 따라 유학한 경우는 인정유학에 해당되므로 이수인정평가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국 시 증빙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 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를 제출할 경우 별도 평가 없이 국내 재학기간과 유학기간 동안의 학기 이수 기록 등을 근거로 적정학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이수인정평가 #재취학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4쪽)

가) 귀국학생 등 제출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25쪽)

나) 학년결정의 원칙

- 학년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학기)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Q91. 한국과 영국의 학제 차이로 인해 학기 이수가 중복되거나 부족한 경우,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학년 배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A91. 1. 인정유학(정당한 해외 출국) 후 귀국학생

- 외국교육기관에서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2.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귀국학생(외국 정규학교를 재학한 경우)

- 귀국 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합니다.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학년 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키워드 #귀국학생 #재취학 #학년배정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경기도 초·중·고 학적 길라잡이(125쪽)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Q92. 학생의 부가 해외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전 가족이 출국하였습니다. 학생이 3학년 때 출국하여 현재 5학년 재학 중입니다. 이번에 부의 귀국 발령으로 6월 중순 경 5학년 전 과정을 마치고 전 가족 함께 귀국 예정입니다. 두바이와 한국 사이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귀국 후 학생이 6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나요?

A92. 가능합니다.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온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라 유학한 경우이므로 인정유학에 해당됩니다. 인정유학 후 국내학교로 복귀할 경우, 귀국 시 증빙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영사관 공증절차를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별도 평가 없이 국내재학기간과 유학기간동안의 학기 이수 기록 등을 근거로 적정학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아포스티유 #이수인정평가 #재취학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19쪽)

〈인정유학(정당한 해외 출국) 후 귀국학생의 학적처리 제출서류〉

- 재취학(재취학, 편입학) 신청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학교 간 학적 전송으로 처리
-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Q93.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한 학기를 외국학교에서 온전히 이수하고 방학기간에 귀국한 경우 실제 학교에 학적을 둔 기간은 6개월 미만이지만 한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인정유학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A93. 가능합니다.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이어야 인정유학으로 처리됩니다. 단, 외국학교의 학제 편제 차이로 인하여 6개월에 미달하지만 한 학기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성적인 산출된 경우에는 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인정유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정당한해외출국 #이수인정평가 #인정유학

관련근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 ①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25쪽)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Q94.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으로 1학기를 마치고 부의 해외 파견근무로 인해 전 가족이 1년 간 외국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나라는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인데 1년 후 귀국 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재취학하게 되나요? 아니면 중학교로 바로 입학하게 되나요?

A94. 차년도 9월 경 귀국 시 외국에서 6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했다면 한 학기를 올려 중학교 1학년으로 취학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정되며 학생이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키워드 #취학 #재취학 #중학교

관련근거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5쪽)

(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24쪽)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경기도 중등 학적 길라잡이(60쪽)

다)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 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1)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Q95.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동일 학교급(초등학교)으로 들어온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95. 외국국적학생의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적의 다문화학생이 국내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 어떠한 사유로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 연령 내에 다시 국내에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기관으로 들어온 경우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재취학으로 처리합니다.

※ 나이스 관련 메뉴: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

키워드 #외국국적 #편입학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26쪽)

3) 학교를 중단한 경우

-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Q96. 2024학년도 2학년 재학 중 질병으로 인하여 6월부터 유예를 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호전되어 2025학년도에 재취학하려 할 경우, 2학년으로만 재취학해야 하는지요? 3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는 없나요?

A96. 장기결석 또는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 당시의 학년에 재취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학년도 재취학이 아닌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상급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습니다.

※ 단,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미확보되는 시기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재취학 및 상급학년 배정은 가능하나 진급이 불가합니다.(유급 대상).

키워드 #질병유예 #재취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Q97. 복수국적 학생의 경우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절차와 동일하나요?

A97.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학생은 외국 국적 학생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복수국적은 「국적법」제11조의 2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복수국적 #이중국적

관련근거**→ 국적법 제11조(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Q98. 외국 국적 학생이 학년을 배정받아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배정이 가능하나요?

A98. 학년 재배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초 학년 배정 시 학생의 학력 및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년 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외국국적 #학년재배정

관련근거**→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135쪽)**

- Q8. 외국 국적 학생이 학년을 배정받아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재학 중 학년을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초 학년 배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진급을 통해 상위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능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경시 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등 시·도교육청별로 정하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99. 면제 학생의 재취학 처리 시 면제 기간 중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부모 중 한 명이 귀국)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학생은 해당기간 동안 해외 정규학교에 재학 하였음)

A99. 면제 학생은 재취학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학년을 배정합니다. 단,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학생의 재취학 시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면제요건미충족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25쪽)

다.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학적처리

1) 대상

-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학생(미인정 해외 출국,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가정내학습 (홈스쿨링), 기타 미인정 장기결석생 등)
- 인정유학으로 해외 출국하였으나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처리절차

- 신청 접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재취학 신청
- 학년 배정: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개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Q100. 해외에서 정규학교에서 3학년까지 마치고 6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귀국과 동시에 바로 재취학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후에 2학기에 재취학 신청해도 되나요?

A100. 귀국학생의 재취학 신청은 귀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최대 1개월 이내에 재취학하기를 권고하며, 다만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이미 이수하고 재취학할 경우는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재취학 신청을 접수하는 개별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재취학시기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42쪽)

Q3. 귀국학생의 재취학 신청은 언제 하나요?

- A. 귀국 후 재취학 신청은 귀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단, 정당한 해외 출국이 아닌 학생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 원칙적으로 재취학이 불가능합니다.

Q101. 전년도 미인정유학(교육부 학력인정 외국학교 재학)으로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인 학생이 올해 2 학기에 재취학할 경우, 수업일수 2/3 미만 출석이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한가요?

A101. 가능합니다. 미인정유학으로 정원 외 학적 관리 된 학생이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 학년도 이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재취학한 해당 학년도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는 것으로 수료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미인정유학 #재취학 #수료 #진급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50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4, 126쪽)

나. 정원 외 학적 관리

1)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미인정 유학(미인정 해외 출국) 등)

2) 재취학 가능 수업일수

- 당해학년 수업일 수 2/3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가능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학생이 정원 외 학적 관리된 다음 학년도 이후에 입급하는 경우 그 당해학년도 수업일수 2/3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단,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42쪽)

Q1. 미인정유학 중에 재취학하는 경우와 미인가 교육 시설이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중에 재취학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미인정 유학 중 재취학: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귀국학생에 준해서 처리합니다.

Q102. 해외 정규학교(교육부 학력인정 외국학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는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상의 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102. 아닙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이외에도 정규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게시물에 첨부된 목록의 학교들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귀국 후 한국학교 재취학·편입학 시 필요한 학적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의 목록에 없는 해외 정규학교에 다녔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

키워드 #미인정유학 #재취학서류 #학력인정학교

관련근거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 초·중·고 교육 게시판)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31쪽)

바. 외국 학력인정학교 확인방법

- 1)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2)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3) 영사 확인
- 4) 1~3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 한글이나 영문 이외의 문자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장의 직인·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해당 학교장의 직인·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Q103.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이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재취학 시 이전된 주소지 학군의 학교가 아닌 원적교(기존 소속 학교)로 재취학이 가능한가요?

A103. 가능합니다. 재취학은 원적교로 재취학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의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원적교에서 학적서류를 송부 받아 거주지 학군내 타학교에 재취학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정원외학적관리 #재취학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26쪽)

다.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학적처리

1) 유의사항

-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으로 함
-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된 경우, 거주지 타학교에 재취학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는 원적교에 재취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요청을 해야 함

Q104. 올해 2월에 재취학 절차가 끝난 학생의 재취학 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04. 재취학일은 학교장 내부결재 시 명시한 날짜로 처리합니다. 학년도가 마감되기 전인 2월에 재취학 신청서 접수(필요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학년배정결정, 학교장 내부결재가 완료되었더라도, 재취학일을 다음학년도인 3월로 명시한 경우에는 3월에 재취학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월 이전에 재취학을 요청했을 경우 3월 1일에 학적 생성이 가능하나, 입학일 이후 재취학을 신청한 경우 실제 등교 시작일로 처리함.

키워드 #재취학 #재취학일자

관련근거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05쪽)

다.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 요약정리

1) 재취학처리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
- 재취학 관련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

⑥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입학, 명예졸업 등(105~111번)

Q105.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4학년으로 조기진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5.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조기진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조기진급 대상요건에 해당하여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학교에 조기진급대상자 신청을 하면, 학교는 4~5월에 희망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6~10월에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및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합니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으면 다음해 2월 조기진급이 가능하며, 조기진급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조기진급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

➡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148~149쪽)

다. 업무 절차에 따른 처리 내용 및 방법

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시행 계획 안내(3월 초)

가) 안내 기한: 매년 3월 초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신청(3~4월)

나) 신청 기한: 학년 초 1개월 이내(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 선정(4~5월)

가)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1·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Q10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대상 교과목 및 실시 방법, 이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06.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교과목은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학년별 대상 교과목 및 실시 방법, 이수 인정 기준 등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통해 정하면 됩니다.

키워드 #조기진급 #조기졸업 #이수인정평가

관련근거

-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
-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적 관리지침(172쪽)

Q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대상 교과목 및 실시 방법, 이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교과목은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이 대상이며, 실시 방법 및 이수 인정 기준은 해당 학교의「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Q107. 2학년에서 조기 진급하여 4학년들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고, 학습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성장 발달의 차이 및 나이 차이로 인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교육관계 형성 등의 이유로 조기진급을 포기할 수 있나요?

A107. 가능합니다.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년 시작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조기진급 #조기진급포기

관련근거

-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적 관리지침(150, 173쪽)

다. 업무 절차에 따른 처리 내용 및 방법

6)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및 학적 처리(2월)

다)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택, 결정된 학년으로 진급 처리

※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음

Q108. 6학년인 학생이 2025년 10월 말에 미인정 유학을 나가서 공부하고 2026년 2월에 돌아온 경우 졸업이 가능한가요?

A108. 가능합니다. 학생의 출석일수가 2025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일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수료 및 졸업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수료 #졸업 #미인정유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Q109. 학부모가 학년말에 학생의 진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유급시킬 수 있습니까?

A109. 불가합니다.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해야 하며, 단순히 학부모가 희망한다는 사유로는 유급 처리가 불가합니다.

키워드 #진급 #유급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e-DASAN현장지원 질문답변(1학년 학생 유급처리 가능 여부)

Q2. 난독증 판정을 받은 1학년 학생 학부모님께서 내년에도 1학년에 다시 다니고 싶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1학년에 다시 재학을 할 수 있는지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A.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 출석한 경우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해야 합니다.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사유로는 유급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Q110. 학기 초에 만 5세 외국인 학생이 조기입학을 희망하며 본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조기입학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학교장 허가로 조기입학 승인이 가능한가요?

A110. 가능합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도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を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신청·처리 절차는 외국 국적 학생 신입학 시 절차 및 내국학생의 조기입학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조기입학 결정은 학교장이 하며, 단위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학령기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조기입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들도 학령기에 입학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외국 국적 학생 또한 학령기 입학을 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외국국적 #조기입학

관련근거

➡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7쪽)

II. 2023학년도 주요 개정사항

- 외국인 아동의 조기입학 신청원 인정 관련 내용 및 절차
 - 현행: 조기입학 관련 지침 미흡
 - 개정안: 초등학교 조기입학 기간에 학교(장)에 신청 시 인정
 - 비고: 외국 국적 학생 신입학 신청·처리 절차와 동일

Q111. 외국 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인적학적사항은 어떻게 변경처리하나요?

A111. 외국 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절차는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성명 수정: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1학년에서 발생: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직접 수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2~6학년에서 발생: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함.

키워드 #외국국적 #다문화학생 #대한민국국적

관련근거

☞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138쪽)

Q17. 외국 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외국 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절차는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성명 수정: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1학년에서 발생: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직접 수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2·3학년에 발생: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함.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6 초등학교 학적 Q&A집

총괄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기획

이명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정기획담당 장학관

이원향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정기획담당 장학사

이왕준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정기획담당 주무관

집필위원

소상훈 양서초등학교 교사

채희준 월포초등학교 교사

권태완 금상초등학교 교사

강신엽 수원교육지원청 주무관

황윤경 성남교육지원청 주무관

이미경 의정부교육지원청 주무관

김울아 파주교육지원청 주무관

김지현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장학사

